

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증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18호)

'95. 9. 28

총무재무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'95. 9. 11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'95. 9. 25
- 다. 상정일자 : '95. 9. 27 제45회 임시회 개회증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, 가결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1회 1일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근배)

가. 제안이유

지방세법에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및 경감율 규정에 따라 자치구 조례증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개정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건축물 및 토지로 정함

- 재산세 (건축물)

◦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: 자치구세조례 제19조 제1항

◦ 재산세 경감율 : 자치구세조례 제19조 제2항

- 종합토지세 (토지)

◦ 구판사업용 부동산 범위 : 자치구세조례 제28조 제1항

◦ 종합토지세 경감율 : 자치구세조례 제28조 제2항

다. 관련근거

- 세정 13400-402 ('95. 6. 2)

라. 조례(안) : 별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임 충빈)

가. 검토내용

-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구판사업(購販事業)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범위와 경감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.

나. 검토결과

-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감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.

° 검토의견

현 행	개 정 (안)	검 토 (안)	비 고
<p>제19조(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의 제3항 및 제4항에서 "구판사업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부동산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 <p>② 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	<p>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의 제3항 및 제4항에서 "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 - 4 (현행과 같음) <p>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	<p>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"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 ---" ---- " (이하같음)</p> <p>(개정'94. 4. 19, '95. 6. 10, '95. 9.)</p> <p>1 - 4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'95. 6. 10, '95. 9.)</p>	<p>(삭제)</p> <p>° 제4항</p> <p>° 당해지방자치단체의</p>

현 행	개 정 (안)	검 토 (안)	비 고
	<p>< 신 설 ></p> <p>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"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"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매·판매 및 그 부속 토지 2. 보관·가공·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.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 4.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 <p>②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.</p>	<p><'95. 6. 10개정시 삭제></p> <p>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"구판사업등 조례가 정하는" ----- (이하같음)</p> <p>(신설 '95. 9.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 '95. 9.)</p>	<p>(삭제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제4항 ◦ 당해지방자치단체의
	<p>부 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(일반적 경과조치) <p>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,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.</p>	<p>부 칙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개정안과 같음) 2. -----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서초구세에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	
다. 관련법규			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구반사업에 해당되는 시설물의 유무 → 개정과 관계 없음.
- 조례안 제19조와 제28조의 해당사항 여부는 → 관련자료 조사중
- 지방세법 제266조에는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고 되어있는데 100분의 75로 하는 이유는 → 적극적으로 감면하여 경감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민들의 혜택을 주기위함.
- 조례심사시 이 내용과 관련된 현재의 감면등 현황을 제출요구 → 제출하겠음
- 감면율 법에 위임없이 25% 상향 조정하는 이유 → 법 제266조 제3항에 위임토록 되어있음.
- 구세감면조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→ 내무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검토해 보지못해서 죄송함.
- 구세면제조례는 97년까지 한시조례이므로 전감하지 않고 100분의 75로 하는 이유 → 상부에서 정한 기준과 준칙에 따른 개정안임.
- 법 제266조의 의해 100분의 75로 하는 근거는 → 당초의 조례에 의함.
- 법 제266조에 의한 것이면 제19조와 제28조를 구분하는 이유는 →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세율을 변동치 않고 부과절차상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는 것임.
- 법에는 50%, 조례에는 75%로 한다면 서초구의 감면현황은 → 양재동 230번지 건물면적 8,350.52 m² 95년 감면 재산세 2,560,120원과 토지 32,287.6 m² 94년 감면 종합토지세 60.829,830원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구판사업용 재산임.
- 외국의 유통시장 개방이 되면 외국산을 취급하는 농협구판 사업에도 감면할 것인가 → 구판장의 판매물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.
- 내곡동 등 개발제한구역내의 창고의 해당 여부 →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자기 소유이어야 감면이 가능함.
- 농수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인상억제를 위해 더 경감할 필요성은 → 더 연구검토 하겠음.
- 직접 사용하는 것의 범위는 → 주차장 등 부속토지 등 부동산임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

가. 반대 : 법 제266조에 100분의 50을 조례로 100분의 75로 감면해 주는 것은 반대함.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 음

7. 심사결과

원안가결 (재석8명중 반대1, 찬성6, 기권1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10. 체계자구 정리내용 : 없 음